

# 인천광역시서해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hae.go.kr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2018호

2026. 8. 3.(월)

차 례

## 고 시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4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 주소 고시 ——— 1

## 공 고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78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2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788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4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179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 
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——— 6

인천광역시 서해구 고시 제2026-145호

##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8. 3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고시내용: 총 1건(건물번호 부여 1건)

| 구분 | 위치    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| 고시일      | 부여사유 | 도로명 부여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여 | 가좌동<br>151-38 | 가정로87번길 8<br>(가좌동) | 2026.8.1 | 신축   |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하시거나 서해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eohae.go.kr>)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-1786호

##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. 8. 3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공단의 역할 확대 및 대내외 인식 제고를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‘서해구 시설관리공단’에서 ‘서해구 시설공단’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타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- 공단 정관 등 내부 규정으로 정함이 타당하거나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조항을 정비하여 공단의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례를 재편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및 공단 명칭 변경

- 조문 내 명칭 정비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내부 운영 관련 조항 삭제(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)
-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 제3조)

### 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(참조: 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5032, 팩스 032-560-274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-1788호

##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. 8. 3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### 1. 자치법규명

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2. 폐지이유

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에 지정·운영 중이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, 더 이상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 구역이 운영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과 준치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### 4. 의견제출

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(참조: 교육지원과, 전화 032-560-3104, 팩스 032-560-271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# 5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·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 - 1791호

##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8. 3.  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### 1. 제정 이유

○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안 제3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안 제8조)
- 다.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라.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# 3. 의견 제출

○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(참조: 예산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5033, 팩스 032-560-274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